

노 후 자 동 차 교 체 용 차 량 확 인 서

신차 구입자			
①성명(법인명)		②주민(사업자)등록번호	
③주소(사업장 소재지)		④연락처	
노후자동차		신차(감면 신청차량)	
⑤차대번호		⑨차대번호	
⑥자동차등록번호		⑩취득일	
⑦최초등록일			
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			
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11조에 따라 노후자동차 교체목적으로 구입한 차량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회사 (인)

작성 방법

- 1.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번호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.
- 2. ⑥자동차등록번호는 말소등록 전의 번호를 적습니다.
- 3. ⑧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, 소유하고 있으면 "Y"라고 적습니다.
- 4. ⑩취득일은 '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일'을 기준으로 적습니다.
- 5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노후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.
- 6. 노후자동차 교체용 차량 확인서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9조의2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은 차량임을 확인하는 것이나, 실제로 해당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.